

# 실내디자인의 사회적인 현상과 유형

이선학 / (주)인들디자인 대표이사

실내디자인의 역사적인 인식과 이론적인 접근은 20여 년간 발행, 발간된 책자와 도서들에서 수없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은 중복해서 인용하지 않았고, 실무에서 행하여졌던 프로젝트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현재, 실내디자인 분야의 사회적인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실내디자인을 영위하는 우리들의(예비디자이너, CEO, 대학, NGO 등) 앞날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 주요 발주 프로젝트 분석 사례

- ① 부산영어체험학교(Global Village 체험학습 전시시설)
- ② 하동 차 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 ③ 고려궁지 내 외규장각 전시시설 설치공사 (강화군) 외  
등 2000년 ~ 2008년까지의 사례분석 다수

상기 주요 발주 프로젝트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 목적의 주요 핵심은 실내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의성 그리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물리적인 행위 (시공 및 제작, 설치) 부분에서 독창성을 인정 및 요구한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감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유형별 사례분석

### 1. 부산영어체험학교(Global Village 체험학습 전시시설)

- 용역비: 30억 원
- 응모자격: 설계 및 시공분야 자격 동시만족 업체  
(컨소시엄-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의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모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설계분야 자격자로 하며 설계자는 시공자가 설계의도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감리하여야 함)

**설계분야:**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

**시공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 시 상: (당선작 1점) 설계 및 시공권 부여

[ 상기 발주 사례의 목적과 법적인 근거 분석 ]

영어 체험학교의 실내디자인 발주 목적은 창의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주방식은 대표사 및 설계권자를 건축사로 함으로써 건설기술공모의 형식을 갖추고, 시공은 턴키 대안발주 방식으로 시공자와 설계자의 협력에 의한 설계내용을 시공자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권을 부여함으로써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사이었다.

즉, 설계시공의 분리 발주 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할 때 시행할 수 있는 턴키 및 대안발주 방식이다. 여기에 포함된 디자인 전문회사 자격 규정은 실내디자인 및 디자인 성과물에서 요구되는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이 각별히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시공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설계권과 시공권을 동시부여한 발주방식의 사례이다.

(제안서 작품심사결과 100%적용)

## 2. 하동차 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 용역비: 9억 2천 만원 (설계비포함)
- 응모자격: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전문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시 상: 당선작 1점 설계 및 시공권 부여.

[ 위의 발주 사례의 목적과 법적인 근거 분석 ]

하동 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수익사업 창출에 목적이 있고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응모자격에서 보듯이 순수디자인 용역사업으로 디자인 전문회사로써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디자인 능력과 실내건축적인 시공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과물의 설계권은 산업디자인 진흥법 9조의 규정에 의해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가지고, 시공(제작, 설치)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턴키 및 대안발주방식으로 설계권과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위의 법적인 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제 43조 2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에 해당되는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한다는 내용이다. 2008년부터는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다.

- 여기에 실내디자인은 전문성, 기술성에 해당되며 계약방식의 기본개념으로 제안서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디자이너의 컨셉이 제안서란 제출도서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훌륭하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100/60점 배점)
- 디자인전문회사이며 실내건축공사업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회사로써의 건실도 (기술인력 보유, 재무구조, 유사사업수행경험) (100/20점 배점)
- 얼마만큼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느냐 (금액) (100점 만점/20점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위의 사항은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고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기업에 해당된다. 디자인 전문회사로써 창의력 있는 설계(Design)능력을 갖추고 창의력이 내재된 설계를 독창적인 시공(제작, 설치)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 3. 총액 입찰 대상공사의 예

사례1. 고려궁지 내 외규장각 전시시설설치공사 (강화군)

사례2. 산청·함양 사건 추모공원 제1전시관 전시시설 설치사업 (산청군)

사례3. 2007년 산림박물관 보완조성 전시시설공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위의 사업들은 총액입찰제도이며 전자입찰로 집행되어 진다. 설계도서와 내역서, 시방서는 건축사에 의해 작성되어지고 시공권은 총액입찰제도로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되어지는 사례들이다. 전자입찰제도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적용한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전자입찰(금액입찰)을 시행한다.

위 1, 2, 3의 사례가 현재 국내에서 실내디자인, 실내건축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발주사례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디자인을 영위하는 모두에게 반가운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발주유형은 **사례2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2007년 후반기 이후부터 보편화 되어져 가는 추세이다.**

- 사례1의 경우의(설계 경기 방식) 단점들을 살펴보면, 설계권자를 건축사법 제 23조 규정에 근거로 시행하다보니 실내건축의 실내디자인적인 독창성, 예술성, 창의성을 겸비한 설계능력을 갖춘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든지 설계 하도급 업체로써 실내디자인 설계를 주업하는 회사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 사례3의 경우(총액입찰제도)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각각 존재하므로 결과물에 관한 법적인 책임규명이 어렵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설계(Design)자의 의도가 시공(제작, 설치)과정에서 전달체계가 없으므로 설계물과 완성물의 오차는 극복하기 힘들다는 문제들이 대두된다.

특히, 디자인적인 결과물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과업 일수록 예산낭비의 문제, 법적인 업무 책임의 문제, 결과물의 질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례2의 유형으로 보편화되어진다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실내디자이너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디자인적인 요소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실내디자인, 실내건축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 [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장 및 환경디자인등록 디자인전문회사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업체 - 전국 3,890개사(2008년 4월 기준-대한전문건설협회)
- 환경디자인 및 종합디자인회사 등록 업체-전국 560개사(2008년 5월 기준-한국디자인진흥원)

상기의 통계에서 보듯이 최대 전국 3,300여개의 회사가 단순 실내건축 공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3,300여개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업체가 디자인 전문회사로써도 동시에 등록이 되어져 실내디자인을 영위 한다면, 아마도 미래는 실내디자인 분야의 독립성을 갖추는 시기는 상당이 앞당길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진다.

[표 1] 기술인력 등급 구분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엔지니어링사업대사의 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기술사 ◦ 기사자격 : 10년 이상 ◦ 산업기사 : 13년 이상	◦ 박사 : 3년 이상 ◦ 석사 : 9년 이상 ◦ 학사 :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7년 이상 10년 미만 ◦ 산업기사 : 10년 이상 13년 미만	◦ 박사 ◦ 석사 : 6년 이상 9년 미만 ◦ 학사 : 9년 이상 12년 미만 ◦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4년 이상 7년 미만 ◦ 산업기사 : 7년 이상 10년 미만	◦ 석사 : 3년 이상 6년 미만 ◦ 학사 : 6년 이상 9년 미만 ◦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12년 미만 ◦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 : 3년 이상

\* 전공자에 대학학력 인증제도의 정립